

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-4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(우분고시 제2017-54호)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22일

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

1. 고시내용 :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

2. 대상국 : 6국(1국 추가)

총괄국	대상국	관서급	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	휴무시간
남양주	경기조안	6급	09:00 ~ 12:00 13:00 ~ 16:30	12:00 ~ 13:00
화 성	장 안	별정국		
강 화	내 가	별정국		
포 천	포천이동	별정국		
	포천영중	별정국		
연 천	연천초성	출장소		

3. 시행일 : 2018. 3. 2. (금)

4. 존속기간 : 이 고시는 점심시간 휴무 해제 시까지 유효